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824

발의연월일: 2025. 4. 15.

발 의 자: 박홍배 • 윤준병 • 김태년

맹성규 • 이용선 • 김태선

이광희・박 정・이용우

서미화 · 김영환 · 정진욱

이재정 • 이정헌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3월 발생한 지리산국립공원 및 주왕산국립공원에서의 대형산불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, 폭설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불 등 각종 재난의 특성을 이해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재난관리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.

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·관리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정된 공공기관으로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이며「산림보호법 시행령」에 따른 산불유관기관임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, 산사태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

그러나 「국립공원공단법」에는 공단이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관리 권한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어 공단이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의 체계적·통합적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.

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국립공원 내 산불, 산사태 등 재난예 방 및 복구 지원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9조).

법률 제 호

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5호(종전의 제14호) 중 "제13호"를 "제14호"로 한다.

5.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 · 대비 · 대응 · 복구 및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9조(사업) 공단은 각 호의 사	제9조(사업)		
업을 한다.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5.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ㆍ대		
	비・대응・복구 및 지원		
<u>5.</u> ~ <u>13.</u> (생 략)	<u>6.</u> ~ <u>14.</u> (현행 제5호부터 제1		
	3호까지와 같음)		
<u>14.</u> 제1호부터 <u>제13호</u> 까지의 사	<u> 15.</u> <u>제14호</u>		
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			
정하는 사항			